
자격관리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학점인정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¹⁾ -

신명훈,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본부

A Study on Criteria for the Academic Credit Approval of Diversified Qualifications - Focusing on Delphi Survey -

Myong hoon Shin, Jong sung Park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국문요약

이 연구는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더불어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방안
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학점인정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격을 통해 인
정받을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 제도 도입과 학점 은행제의 직무체계를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자격의 과다 학점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점인정 개선 기준은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조
사를 통하여 실시하였다.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 자격의 수를 제한, 동일 직무분야의 능력에 대해
서는 최상위 자격만 인정, 자격별 동일 시험과목이 있을 경우 중복 시험과목당 학점 감산제를 통해 두
개 이상 자격 취득시 동일 시험과목을 중복하여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 자격분류체제로는 늘어나는 자격의 적절한 분류가 어려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KRIVET 자격분류표를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한 신규 자격분류체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study aims to design and suggest criteria of the academic credit approval for those who
obtain diverse qualific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a Delphi survey was
conducted.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based on the argument that existing
credit approval system covering all qualifications requires improvement especially due to limited
function and efficiency.

First, most respondents who took part in the management of academic credit bank system in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tated that the current system is of limitation. Out of the

1)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자격관리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학점인정방안
연구 중 델파이 조사연구만을 재구성하여 학회에 투고한 논문임.

all items, one was indicated as one not directly related the majoring area for the degree, three items were indicated as approved in the bachelor degree and two items were as approved in the associate degree.

Second, occupational area for approving qualification items sh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KRIVET classification structure for national qualification.

주제어 : 자격, 학점인정, 델파이 조사

Keywords : Qualification, Academic Credit Approval, Delphi Surve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학점은행제는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개인적 경험과 학습을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에게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생에 걸쳐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김신일 외, 1996). 특히 다양한 경험학습을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과 연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 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신명훈·박종성, 2003).

그러나 학점은행제 학점원 중 유일하게 자격 취득으로 인한 학점 인정에는 상한선이나 제한규정이 없어 학습자들이 평가인정과목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수업이수를 최소화하고 자격증만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문대 졸업 후 자격증으로 인해 한 학기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속성 학위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자격학점이 이용되면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될 위험이 있고, 학점은행제가 편입을 위한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타 학점원에 비해 자격 학점인정이 학습자의 자격 취득을 위한 실제 노력보다 더 많은 학점을 인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점은행제로 인한 학위 취득자의 학위의 질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으로 학점원이 늘어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의 상한선을 두어 지나친 자격 학점인정으로 인한 학위의 질 저하를 방지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신명훈 외, 2004).

또한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격에 대한 직무분류체계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체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졌다가 개별법의 자격을 수용하기 위해 필요에 의해 직무분류가 늘어난 상태로써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합리적으로 분류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 상한선에 대한 논의나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자격 및 공인민간자격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직무분류 체계에 대한 논의 및 연구들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학점은행제 관련 전문가와 자격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 시 상한선 설정 문제와 자격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적절한 직무분류체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 상한선의 적절성 여부와 자격을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직무분류체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II. 학점인정운영 실태

1.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 관리

현재 학점은행제 학점원 중 유일하게 자격 취득으로 인한 학점 인정에는 상한선이나 제한규정이 없다. 자격증의 경우 연간제한 학점이나 학기당 제한 학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학습자들이 평가인정과목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수업이수를 최소화하고 자격증만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4a).

<표 1>은 다양한 학점원을 제시한 것인데 자격을 통하여 학점을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이 무한대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근 들어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을 통하여 속성과정으로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학원이나 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자격을 학위 취득의 수단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다양한 학점원

학점원	수업을 통한 이수			시험합격 등의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독학면제 과정이수	시간제 등록이수	자격증	독학사시험	중요무형 문화재
이수 제한	학기당 24학점 연간 42학점			무한대	1단계: 20학점 2단계: 30학점 3단계: 30학점	보유자 : 140학점 교 : 60학점 이수자 : 30학점 전수생 : 4~21학점

또한, 전문대 졸업 후 자격증으로 인해 한 학기 만에 학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속성 학위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자격학점이 이용되면서 학점은행제 학사학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저하될 위험이 있고, 특히, 학점은행제가 편입을 위한 편법으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b).

자격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자격을 중심으로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이 아닌 자격 관련 교육만을 담당하는 사설학원이 자격 취득과 학점은행제 이용을 접목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학습자를 선동하여 개인의 실무능력 향상과는 상관없이 학위취득만을 위해 불필요한 자격 취득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학점은행제 자격학점인정의 본래 취지인 경험학습의 사회적 인정과 이를 통한 개인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의 의미가 희석되고 있다(<표 2>, <표 3> 참조).

<표 2> 사실기관에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 안내로 사용하는 예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넷정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정보시스템개발 전공			경영, 마케팅정보 전공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교양	사이버대학 시간제	18	교양	사이버대학 시간제	18
전공	컴활1,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48	전공	판매관리사2급 텔레마케팅관리사	51
일선	판매관리사2급	24	일선	컴활1급	18
총학점	90학점		총학점	87학점	

<표 3> 사설기관에서 학사 학위 취득 안내로 사용하는 예

컴퓨터공학, 전자계산학, 멀티미디어학 전공			E-비즈니스학 전공		
구분	과목	학점	구분	과목	학점
교양	사이버대학 시간제 독학사1단계 3과목	30	교양	사이버대학 시간제 독학사1단계 3과목	30
전공	컴활1,2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70	전공	전자상거래운용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사이버대시간제 6학점 독학사1단계 1과목	61
일선	판매관리사2급 워드1급 독학사2단계 2과목	42	일선	컴활1급 판매관리사2급 독학사2단계 2과목	52
총학점	142학점		총학점	143학점	

또한, 자격 중에는 교육과정 이수에 의한 시험과목 면제나 기 취득한 자격에 의해 일부 시험과목이 면제되는 등 손쉽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학점인정상의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여 실제로 학습자의 노력에 비해 과다한 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동일직무의 자격에 있어서 상위자격 100%인정, 하위 자격을 순서대로 75%, 50%, 25% 순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 직무인데도 불구하고 중복적으로 자격별 학점을 인정한다는 지적이 있다.

2. 자격 직무분류 체계 현황

가. 학점인정 기준상의 직무분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상의 직무분류는 1. 기계, 2. 금속, 3. 화공 및 세라믹, 4. 전기, 5. 전자, 6. 통신, 7. 조선, 8. 항공, 9. 토목, 10. 건축, 11. 섬유, 12. 광업자원, 13. 정보처리, 14. 국토개발, 15. 농림, 16. 해양, 17. 산업디자인, 18. 에너지, 19. 안전관리, 20. 환경, 21. 산업응용, 22. 교통, 23. 공예, 24. 서비스(음식료), 25. 서비스(위생), 26. 서비스(사무), 27. 교육, 28. 경영, 29. 금융/회계, 30. 체육/건강, 31. 문화/예술/관광, 32. 사회, 33. 의료/복지, 34. 행정 과 같이 34개의 직무분야를 기준으로 자격과 표준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자격 학점인정 시 활용되고 있다. 학점인정 기준상 자격에 대한 직무분류체계는 1998년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류를 바탕으로 만들어 운영되다가 개별법의 국가자격을 수용하기 위해 직무분야가 34개로 확장된 상태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2).

그러나 향후 늘어날 개별법에 의한 국가자격과 앞으로 인정될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위와 같은 분류 체계로 분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직무분류 체계에 있어서 직업코드, 표준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 취업알선코드 등과의 연계가 미흡하여 현재의 34개 직무분류 체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나. 직능원(KRIVET) 자격분류표

이동임 외(2003)는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통하여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민간자

격에 대한 분류코드를 제시한바 있으며, 직능원에서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직능원 자격 분류 및 코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1차 분류로 대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대분류는 먼저, WIC-OES에 근간한 대분류 목록에 따라 분류한 다음, 발생하는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여 재분류하였다. 대분류 시에 적용된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첫째, 기존에 연구된 국·내외 자격·직업·훈련코드 등의 대분류 명칭 및 분류법을 참조하였다.

둘째, 대분류의 기본골격은 WIC-OES 및 신직업 훈련코드의 대분류법에 근간으로 한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2). 국내참조분류는 표준직업분류, 고용직업분류, 취업알선코드, 신직업 훈련코드, 국가기술 자격종목 분류, 표준산업분류, 표준직업분류 등을 참조하였고, 국외분류는 NOC(캐나다), ESCO(일본), 일본자격, 미국민간자격, 영국자격, ASCO(호주) 등을 참조하였다(중앙고용정보관리소, 2000; 노동연구원, 2000).

셋째, 대분류 명칭 안에 들어있는 자격 종목 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대분류를 하였다. 가급적 대분류 하나에 포함된 자격 종목 수는 균형 있게 분포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자격종목에 포함된 취득자 수 등을 고려하였다.

넷째, 설정된 자격 대분류 명칭에 대한 향후 자격종목 신규 신설 전망을 고려하였다.

다섯째, 대분류 속에 포함된 자격간의 상호 연관성(직무의 유사성, 훈련의 유사성)을 고려하였다. 이 상과 같은 분류기준을 바탕으로 <표 4>와 같이 대분류를 설정하였다.

<표 4>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자격분류표

NO	대분류	NO	대분류
1	경영/회계/사무	11	재료
2	금융/보험	12	목재/가구/공예
3	교육/법률/복지	13	화학/에너지
4	보건의료	14	섬유
5	문화/예술	15	전기/전자
6	운전/운송	16	정보/통신
7	영업·판매관련 자격	17	식품
8	이·미용·관광·스포츠	18	인쇄·출판/디자인
9	건설	19	환경/비파괴/안전관리
10	기계	20	농림/해양·수산
		21	공통/기초사무

또한, 대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유형(qualification type)에 따라 중분류를 실시하였다. 중분류는 첫째, 기존에 연구된 국·내외 자격·직업·훈련코드 등의 대분류 명칭 및 분류법을 참조하였다. 둘째, 중·소분류의 기본골격은 신직업 훈련코드의 중·소분류법에 근간으로 하였다. 셋째, 중·소분류 속에 포함된 자격간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였고, 넷째, 대분류 명칭 안에 들어있는 자격 종목 수를 적절히 고려하여 중분류 실시하였다. 다섯째, 설정된 자격 대분류 명칭에 향후 자격종목 신규 신설 전망을 고

려 여유 코드를 두었다. 또한, 중분류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유형과 수준(qualification level)에 따라 소분류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자격의 직무분류 체계는 현재 교육개발원에서 사용하는 34개의 직무분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자격분류(21개 대분류) 기준을 토대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델파이 조사 개요

이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모든 자격을 포괄할 수 있는 학점인정 직무분야 분류코드와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 상한선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

2. 델파이 조사 대상

델파이 조사는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전문가와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업무에 참여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자격관련 전문가, 학점인정 관련 전문가, 학점인정심의에 참여하는 분과위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훈련기관, 학계 등의 자격 및 교육 훈련 관련 전문가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델파이 조사 대상 전문가 집단의 분포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한상공회의소 자격전문가 5명,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전문가 5명,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심의회 위원 11명, 학점인정관련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교육개발원 인력풀에 있는 각 대학 평생교육원 관계자 9명,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인정보부 전문가 5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전문가 5명으로 구성하였다.

<표 5> 델파이 조사 전문가 집단의 분포

(단위 : 명)

분 류	대한상공 회의소	한국산업 인력공단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평생교육원		한국교육 개발원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4년제	2년제		
델파이 전문가	5	5	11	3	6	5	5

※ 델파이전문가는 자격관련업무와 학점인정 관련 업무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선정(최소 경력 5년 이상인자, 학력 석사 이상인자)함. 델파이 전문가 선정시 연구진과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전문가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결정하였음.

3. 델파이 조사기간

델파이 조사 기간은 아래의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 8월 2일부터 8월 15일까지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고, 2004년 9월 1일부터 2004년 9월 10일까지 2차 델파이 조사를, 2004년 10월 8일부터 2004년 10월 15일까지 3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학계가 15명(37.5%),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18명(45.0%), 기타 7명(17.5%)으로 구성되어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표 6> 델파이 조사 응답자 분포 및 조사 기간

(단위 : 명, %)

분 류		1차 델파이 조사 (2004/08/02 ~ 08/15)	2차 델파이 조사 (2004/09/01 ~ 09/10)	3차 델파이 조사 (2004/10/08 ~ 10/15)	
학 계	대학교 교수	4(10.0)	4(10.0)	4(10.0)	
	전문대학 교수	3(7.5)	3(7.5)	3(7.5)	
	평생 교육원	대학교	4(10.0)	4(10.0)	4(10.0)
		전문대학	4(10.0)	4(10.0)	4(10.0)
연구기관의 연구원		18(45.0)	18(45.0)	18(45.0)	
기 타		7(17.5)	7(17.5)	7(17.5)	
합 계		40(100.0)	40(100.0)	40(100.0)	

IV. 델파이조사 결과 분석

델파이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학점인정 상한선 설정과 적정 자격 직무 분류 체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1. 1차 델파이 조사

<표 7>은 학점인정 상한선 설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학점인정 상한선 설정에 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전체 40명 중 38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95.0% 로 제시되고 있어 학점인정 상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7> 학점인정 상한선 설정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빈 도	비 율
찬 성	38	95.0
반 대	2	5.0
합 계	40	100.0

<표 8>은 동일직무 상·하위 자격을 다수 취득했을 경우 학점인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직무별 최상위의 하나만 인정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4명(6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상위 100%, 하위 75%, 50%, 25% 순으로 인정한다'는 의견이 9명(22.5%)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학점인정 방식에 있어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8> 동일직무 자격 다수 취득 시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동일 직무별 최상위 하나만 인정함	24	60.0	64.9
현행 학점인정 방식	9	22.5	24.3
기 타	4	10.0	10.8
합 계	37	92.5	100.0

주) 무응답 3명(7.5%)

<표 9>는 자격직무 분류표에 의거한 최상위 등급 인정 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번호별 최상위 등급을 인정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0명(5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중분류별 최상위 등급을 인정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12명(3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분류별로 최상위 등급을 인정한다'는 의견과 기타 의견이 각각 3명(7.5%), 1명(2.5%)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상의 등급인정은 직무번호별로 이루어짐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표 9> 자격직무 분류표에 의거한 최상위 등급 인정 안에 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직무번호별	20	50.0	55.6
중분류별	12	30.0	33.3
대분류별	3	7.5	8.3
기 타	1	2.5	2.8
합 계	36	90.0	100.0

주) 무응답 4명(10.0%)

<표 10>은 학위 수준별 자격을 통한 최대 인정학점 상한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위수준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에 의한 상한선²⁾'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13명(32.5%)으로 나타났으며, '학위수준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³⁾'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25명(62.5%)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최대 인정 학점상한제는 최대학점 범위보다는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0> 학위 수준별 자격을 통한 최대 인정학점 상한제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최대학점에 의한 상한선	13	32.5	51.9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	25	62.5	48.1
합 계	38	95.0	100.0

주) 무응답 2명(5.0%)

2)자격증 인정 가능학점 학사는 60학점, 전문학사는 45학점

3)학위취득 시까지 학사는 2개 분야 최대 3개 자격만 인정하고, 전문학사는 1개 분야 최대 2개 자격만 인정

학점은행제 운영 시 자격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직무 분류기준으로 직능원 자격 분류기준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7명(67.5%)로 교육개발원의 직무분류기준을 고려하는 것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새로 학점인정을 고려해야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의 다양한 자격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직능원에서 제시한 자격의 분류체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표 11>).

<표 11> 직무분류 기준에 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유효비율
직능원 자격 분류기준	27	67.5	69.2
교육개발원 분류기준	12	30.0	30.8
합 계	39	97.5	100.0

2.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

<표 12>는 학위수준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 설정 시 적정 학점인정 자격 수에 관한 2차와 3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학위취득 시까지 학사는 최대 2개 자격만 인정하고, 전문학사는 최대 1개 자격만 인정한다'는 의견이 2차 조사 결과, 전체의 15명(37.5%)으로 나타났으며, '학위취득 시까지 학사는 최대 3개 자격만 인정하고,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자격만 인정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0명(5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3차 조사 결과도 2차 결과와 같이 '학위취득 시까지 학사는 최대 2개 자격만 인정하고, 전문학사는 최대 1개 자격만 인정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15명(37.5%)으로 나타났으며, '학위취득 시까지 학사는 최대 3개 자격만 인정하고,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자격만 인정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21명(52.5%)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학사에서는 3개의 자격 전문학사에서는 2개의 자격에 대해 학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12> 학위수준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 설정 시 적정 학점인정 자격 수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학사 2개, 전문학사 1개 인정	15	(37.5)	15	(37.5)
		(38.5)		(38.5)
학사 3개, 전문학사 2개 인정	20	(50.0)	21	(52.5)
		(51.3)		(53.8)
학사 4개, 전문학사 1개 인정	1	(2.5)	1	(2.5)
		(2.6)		(2.6)
기 타	3	(7.5)	2	(5.0)
		(7.7)		(5.1)
합 계	39	(97.5)	39	(97.5)
		(100.0)		(100.0)

주) 무응답 1명(2.5%)

<표 13>은 동일 등급 감산 적용 시 감산의 폭에 관한 2차와 3차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2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 후 현장경력 이상 수준(C- 이상)은 과목당 3학점씩 감산하고, 2년제 전문대 졸업자 이하 수준(D- 이하)은 과목당 2학점씩 감산한다'는 현행 감산 수준에 대해 전체의 19명(47.5%)이 응답했고, 'C- 이상은 과목당 3학점씩 감산하고, D- 이하는 과목당 3학점씩 감산한다'는 산업기사 이하의 감산 폭 확대에 대해서는 전체의 13명(32.5%)이 응답한 것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3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현행 감산 수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1명(52.5%)으로 나타났고, '산업기사 이하의 감산 폭 확대'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11명(27.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냈다. 따라서 현행 감산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표 13> 동일 등급 감산 적용시 감산의 폭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빈 도	비 율	빈 도	비 율
현행 감산 수준	19	(47.5)	21	(52.5)
	유효비율	(47.5)	유효비율	(52.5)
산업기사 이하의 감산 폭 확대	13	(32.5)	11	(27.5)
	유효비율	(51.3)	유효비율	(27.5)
기사 이상의 감산 폭 축소	5	(12.5)	5	(12.5)
	유효비율	(2.6)	유효비율	(12.5)
기 타	3	(7.5)	3	(7.5)
	유효비율	(7.7)	유효비율	(7.5)
합 계	40	(100.0)	40	(100.0)
	유효비율	(100.0)	유효비율	(100.0)

<표 14>는 학위수준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에 관한 2차와 3차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차 델파이 조사에 학위수준별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에 대한 응답이 학점에 수에 의한 상한선보다 우세한 결과를 바탕으로 2차와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먼저 2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3명(82.5%),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6명(15.0%)으로 나타났으며, 3차 조사에서도 2차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대체적으로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 설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학위수준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수에 의한 상한선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		빈도	
동의한다.	빈도	33	빈도	33
	비율	(82.5)	비율	(82.5)
	유효비율	(84.6)	유효비율	(84.6)
동의하지 않는다.	빈도	6	빈도	6
	비율	(15.0)	비율	(15.0)
	유효비율	(15.4)	유효비율	(15.4)
합계	빈도	39	빈도	39
	비율	(97.5)	비율	(97.5)
	유효비율	(100.0)	유효비율	1(100.0)

<표 15>는 자격에 하위종목이 있는 경우 인정 문제에 관한 2차와 3차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2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하위 종목의 다수 자격을 취득해도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자격만 인정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4명(60.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현행과 같이 동일 자격 내의 하위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과목 감산을 통해 감산하여 모두 인정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6명(40.0%)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3차 델파이 조사에서도 2차 조사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5> 자격에 하위종목이 있는 경우 인정 문제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		빈도	
하나의 자격만 인정한다.	빈도	24	빈도	24
	비율	(60.0)	비율	(60.0)
	유효비율	(60.0)	유효비율	(60.0)
모두 인정한다.	빈도	16	빈도	16
	비율	(40.0)	비율	(40.0)
	유효비율	(40.0)	유효비율	(40.0)
합계	빈도	40	빈도	40
	비율	(100.0)	비율	(100.0)
	유효비율	(100.0)	유효비율	(100.0)

<표 16>은 동일직무에 2개 이상의 기술사 혹은 기능장이 포함되었을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2차와 3차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1차 텔파이 조사 결과 동일직무 내 최상위 자격 1개만 인정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2차와 3차 텔파이 조사에서 심층적으로 설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2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동일직무이지만 높은 수준의 자격이므로 100% 인정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명(7.5%)으로 나타났고, '학습자의 선택에 따라 동일직무 내 한 개의 자격만 학점인정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22명(55.0%)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복수로 인정하되 일정 부분 감산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15명(37.5%)으로 나타났다. 3차 조사 결과에서도 2차와 동일한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동일직무 2개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이 있더라도 한 개의 자격만을 학점인정 해야 할 것이다.

<표 16> 동일직무에 2개 이상의 기술사 혹은 기능장이 포함되었을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구 분	2차 조사		3차 조사	
	빈 도		빈 도	
100% 인정한다.	3		3	
	비 율	(7.5)	비 율	(7.5)
	유효비율	(7.5)	유효비율	(7.5)
한 개의 자격만 학점인정한다.	22		22	
	비 율	(55.0)	비 율	(55.0)
	유효비율	(55.0)	유효비율	(55.0)
복수로 인정하되 일정부분 감산한다.	15		15	
	비 율	(37.5)	비 율	(37.5)
	유효비율	(37.5)	유효비율	(37.5)
합 계	40		40	
	비 율	(100.0)	비 율	(100.0)
	유효비율	(100.0)	유효비율	(100.0)

<표 17>은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직무분류 중 대분류 개선안에 대한 관한 2차와 3차 설문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2차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분류 개선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3명(82.5%)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6명(15.0%)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 조사 결과에서도 2차 조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분류 개선안을 수용하여 KRIVET 직무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학점인정 직무분류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표 17> 대분류 개선안에 관한 견해

(단위: 명, %)

구분	2차 조사		3차 조사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동의한다.	빈도	33	빈도	33
	비율	(82.5)	비율	(82.5)
	유효비율	(84.6)	유효비율	(84.6)
동의하지 않는다.	빈도	6	빈도	6
	비율	(15.0)	비율	(15.0)
	유효비율	(15.4)	유효비율	(15.4)
합계	빈도	39	빈도	39
	비율	(97.5)	비율	(97.5)
	유효비율	(100.0)	유효비율	(100.0)

주) 무응답 1명(2.5%)

3. 논의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조사를 통하여 학점인정 상한선 및 직무분야 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상한선이 없음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인 다 자격 취득자에 대한 무제한 학점인정, 동일분야 자격취득자에 대한 학점 과다 부여, 자격을 통한 연간 및 학기 당 제한학점 없음으로 인한 자격집중 현상,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의 본래 취지 희석, 자격을 통한 속성 학위취득으로 학점은행제가 편입을 위한 편법으로 변질 우려, 학위의 질적 저하 초래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학점인정 상한선을 설정의 필요성에 찬성(95%)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 시 상한선 설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학점인정의 상한선은 자격 수에 의한 제한이라는 의견이며,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까지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는 최대 3개 자격만 인정하고, 전문학사는 최대 2개 자격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델파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 상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무분류에 대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자격분류표 체계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7.5%로 기존의 직무분류체계를 따르자는 의견(30.0%)보다 높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향후 늘려날 수 있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등을 직무분류체계 안에서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직무분류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직능원에서 제시한 자격의 직무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학점인정관리 운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직무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델파이 조사 결과 동일직무 자격 다수취득 시 학점인정에 대한 의견에 동일직무 최상위 자격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로 높게 제시되고 있어 현재 학점운영제에서 동일직무 자격에 대한 중복인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직능원 자격분류표에 의해 최상위 자격 등급 인정 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직무 번호별 최상위 등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동일등급 감산 적용 시 감산에 대한 폭은 현행과 같이 C- 이상에서는 과목당 3학점씩 감산하고 D 이하에서는 과목당 2학점씩 감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47.5%로 가장 높은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다.

여섯째, 자격에 하위종목이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자격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동일 직무에 2개 이상의 기술사 혹은 기능장이 포함되었을 경우 기술사, 기능장을 현재와 같이 각각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자격 기술사만을 인정하자는 델파이 조사결과(55%)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체도를 검토하여 기술 분야 최고의 자격인 기술사와 기능분야 최고의 자격인 기능장이 동일 분야 안에서 중복될 경우 하나의 자격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격 종목 내에 세부 분야가 나뉘어 있는 자격의 경우에도 여러 개의 분야 자격을 취득한 학습자라 할지라도 선택하는 하나의 자격에 대해서만 학점인정을 해야 한다.

V. 결 론

이 연구는 그 동안 시행되어왔던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과 더불어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학점인정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격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인정 상한선 제도 도입과 학점 은행제의 직무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도록 한다.

첫째, 자격의 과다 학점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점인정 개선 기준은 전문가를 활용한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① 학위수준별 최대 인정 가능 자격의 수(전문학사 2개, 학사 3개)를 제한한다. ② 동일 직무분야의 상하위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해 현행 기준에 의거 두 자격 모두 인정하는 방식을 탈피하여 동일 직무분야의 능력에 대해서는 최상위 자격만 인정한다. ③ 자격별 동일 시험 과목이 있을 경우 중복 시험과목당 학점 감산제를 통해 두 개 이상 자격 취득시 동일 시험과목을 중복하여 학점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한다.

둘째, 기존 자격분류체제로는 늘어나는 자격의 적절한 분류가 어려워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KRIVET 자격분류표를 기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한 신규 자격분류체제를 제시하였다. 기존 분류체제가 대분류 34개로만 구성된 것에 비하여 신규 분류체제는 대분류 21개와 중분류 124개로 구성되어 있어 자격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으며, 신규로 인정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효과적으로 분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관련 타 시스템과 학점은행제 자격학점인정 시스템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에서 자격 학점으로 인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제시하는데 에 그 의의를 두고 시작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시된 자격 학점인정 개선 기준(안)이 실시될 경우 사실학원을 통한 무분별한 자격 취득과 속성학위취득의 문제나 자격취득자에 대한 과다 학점인정과 같은 현재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새로운 자격분류체제의 시행으로 유사 자격들의 분류가 더욱 명확해져 동일 직무 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감산 기준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김신일 외(1996). 학점은행제 도입 및 실시방안. 교육부 중앙교육심의회 평생교육분과위원회.
신명훈, 박종성(2003). 국가공인 민간자격 학점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신명훈, 박종성, 유지윤(2004). 자격관리주체의 다양화에 따른 학점인정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이동임, 김덕기, 김상호(2003).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앙고용정보관리소(2000). 취업알선코드 설명집. 중앙고용정보관리소.
한국노동연구원(2000). 고용직업분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2004a). 자격 학점인정기준 협의자료(1).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4b). 자격 학점인정기준 협의자료(2). 내부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02). 국가자격 학점인정 기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2002). 2002 WIC-OES 직업분류. 한국산업인력공단.